

학칙개정(안) 사전공고

본교 학칙 제67조에 의거하여 학칙개정(안)을 사전공고 하고자하오니 교직원, 학생 등 관계자께서는 내용을 검토 하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: 2025년 1월 14일 ~ 1월 24일까지

* 제출방법 : 의견서를 교학처 또는 이메일(kua@kua.ac.kr)로 제출

국제예술대학교 학칙 개정 사유 및 신규대조표

1. 개정 사유

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학과 및 산학협력단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,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신청 학점 조항 개정

2. 주요 개정 내용

- ① 계약학과 및 산학협력단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.
- ② 시간제등록생 신청 학점을 변경함.

3. 신·구조문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31조(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)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제31조(계약학과) ①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학과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2025.02.06.>	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2024. 12. 3.

		개정
제45조(시간제등록제)⑤ 교육과정은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며, 매 학기 취득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하며,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	제45조(시간제등록제)⑤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2025.02.06.>	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제 53조9항 2024. 2. 20. 개정
제15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	제15장 산학협력단 및 부속기관	
	제66조(산학협력단)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2025.02.06.>	
제66조(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)	제67조(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)	조 변경
제67조(학칙 개정)	제68조(학칙 개정)	조 변경
제68조(심의 및 공포)	제69조(심의 및 공포)	조 변경
제69조(보고)	제70조(보고)	조 변경
제70조(시행세칙)	제71조(시행세칙)	조 변경
	부 칙 ① 이 학칙은 2025년 2월 6일부터 부터 시행한다.(제31조 계약학과 신설, 제 45조 시간제등록제 신청학점 수정, 제66조 산학협력단 신설)	

